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58호)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49호)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67호)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76호)
-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83호)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91호)
-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38호)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26호)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42호)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227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개요	1
1.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58호)	1
2.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49호)	3
3.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67호)	4
4.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76호)	5
5.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83호)	7
6.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91호)	9
7.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38호)	10
8.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26호)	12
9.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42호)	14
10. 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227호)	16
II . 검토의견	17
1. 고용보험사업 비용의 일반회계 부담 비율 규정	17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19

I. 개요

1.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58호)

가. 제안경위

2024년 6월 10일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등의 휴가·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휴직·휴가 기간이 자녀 양육 등을 위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직장문화나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사업주가 휴직·휴가 부여를 암묵적·명시적으로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직·휴가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여전히 자녀 양육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어 직장 내 남녀 근로자의 채용·승진·퇴직 등 근로 전반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직장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기간으로 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보다 충분한 기간을 보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2. 박해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49호)

가. 제안경위

2024년 6월 11일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67호)

가. 제안경위

2024년 6월 12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상당기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유급휴가인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의 급여 지원기간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함으로써 남성의 출산 참여 확대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1항제2호).

4.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76호)

가. 제안경위

2024년 6월 12일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는 출산에 대하여 배우자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모성을 보호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중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로 규정하고 있음.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기간이 불충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30일’로 확대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 기간을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난임치료휴가에 대하여 현행 난임치료휴가 기간 ‘3일’ 중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1일’로 규정하고 있음. 난임치료

휴가 기간과 급여 지급 기간이 불충분하여 난임치료휴가의 사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는 한편,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 지급 기간을 난임치료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5.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83호)

가. 제안경위

2024년 6월 18일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기존에 여성을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남성을 보조자로 인식하던 것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출산·육아·가사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과 문화가 확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0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6.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91호)

가. 제안경위

2024년 6월 20일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7.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38호)

가. 제안경위

2024년 6월 24일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음.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적극적 육아 참여, 난임부부에 대한 치료 확대 등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는 그 연장선상에서 도입되었음.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여,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배우자 출산휴가기간(10일)은 9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을 고려하면 남성 근로자의 적극적 육아 참여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간 3일의 기간은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난임치료에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만이 휴가기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례에서도 이를 알 수 있음.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휴가기간 전체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36일로 연장하고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제76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8.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926호)

가. 제안경위

2024년 6월 25일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최초 1일의 유급 휴가를 포함하여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난임치료 기간에 비하여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너무 짧고 최초 1일만 유급이어서 난임치료휴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제1항제3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9. 홍기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42호)

가. 제안경위

2024년 7월 1일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안정된 환경을 보장하여 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받은 경우에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휴가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시술 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휴가 및 제도 보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기간은 3일, 유급휴가는 최초 1일만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간 60일, 의사 진단에 따라 최대 90일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범위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포함함으로써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10. 임의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227호)

가. 제안경위

2024년 7월 25일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일 중 5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Ⅲ. 검토의견

1. 고용보험사업 비용의 일반회계 부담 비율 규정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임이자의원안은 국가로 하여금 전년도 고용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고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u>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u>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국고의 부담) ① ----- - <u>예산의 범위에서 전년도 보험료</u> <u>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을</u>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국가가 매년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일·가정 양립 사업의 지급 대상·수준 등이 확대 추세에 있는바, 주요 재원이 되는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계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¹⁾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이자의원안은 국가가 전년도 고용보험료 수입액의 20%에

1) '24년 일반회계 전입금: 4,000억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고용보험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인 지출을 도모한다는 데에 입법적 의의가 있음.

다만,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규모에 대해서는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강화는 저출생 해결을 위한 국가적 과제인바, 일반회계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참고로,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 비율을 규정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108조(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한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5일에서 확대하려는 것으로, 일부 개정안은 함께 제출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²⁾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제75조)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박해철·이수진·김희정·김정재· 김장겸·한정애·홍기원·임이자의원안) 난임치료휴가 추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제76조제1항제2호)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초 5일	(박성훈·박해철·이수진·김정재·김장겸· 임이자의원안) 휴가 전체 기간 (한정애·김희정의원안) 10일 (홍기원의원안) 현행유지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기간 (안 제76조제1항제3호)	신 설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이수진의원안) 휴가기간 (홍기원의원안) 휴가기간 우선지원대상기업 아닌 경우 45일 한정 (한정애의원안) 5일 (박해철의원안) 3일 (김희정·김정재·임이자의원안) 2일

2) 박성훈의원안(제2200256호), 박해철의원안(제2200346호), 이수진의원안(제2200386호), 김희정의원안(제2200584호), 김정재의원안(제2200700호), 김장겸의원안(제2200837호), 한정애의원안(제2200925호), 홍기원의원안(제2201241호)

나. 검토의견

개정안과 함께 제출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있음.

[표] 현행 및 개정안 비교

구분	배우자 출산휴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휴가기간 (유급)	고보기금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한정)
현행	10일	5일
박성훈의원안	20	휴가기간
박해철의원안	10	휴가기간
한정애의원안	20	10
이수진의원안	30	휴가기간
김희정의원안	20	10
김정재의원안	20	휴가기간
김장겸의원안	30	휴가기간
홍기원의원안	현행유지	
임이자의원안	10일(다태아 20일)	휴가기간

구분	난임치료 휴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휴가기간	유급기간	고보기금 지원	
현행	3일	1일	0일	
박성훈의원안	현행유지			
박해철의원안	6	3	3	우선지원 대상기업 한정
한정애의원안	10	5	5	
이수진의원안	10	사용기간	사용기간	
김희정의원안	6	2	2	
김정재의원안	6	2	2	
김장겸의원안	36	사용기간	사용기간	
임이자의원안	6	2	2	
홍기원의원안	60+30(의사진단시)	사용기간	사용기간	대규모 기업
			45	

이에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설하여 유급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현행 5일에서 확대하려는 것으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부 부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별로 지원범위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난임치료 소요일 수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제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5일에서 현행 배우자출산휴가 기간(10일)으로 확대 시 향후 5년간(2024~2028년) 총 252억원(연평균 50억원), 난임치료휴가 급여(2일) 신설 시 향후 5년간 총 333억원(연평균 67억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산출되었음.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4~2028년

(단위: 억원)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 계	연평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	28 (24, 下 시행)	56	56	56	56	252	50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37 (24, 下 시행)	74	74	74	74	333	67

※ 자료: 고용노동부

한편, 2024년도 고용보험기금 기금운용계획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 확대(5일 → 10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에 따른 사업비 27억 9,200만원이 반영되어 총 83억 7,500만원(전년 대비 18.8% 증액)이 편성되었고,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2일 유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한정)에 따른 사업비 36억 7,300만원(순증)이 편성되었음.

문 의 처
02)6788-5539